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19-89 관련
----------	-------------

발의년월일 : 2019. 7.

발 의 자 : 정혜경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설치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<u>국민</u>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3조 ~ 제10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4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	
번호	

발의년월일 : 2019. 7.

발 의 자 : 정혜경 의원 외 1명

## 1. 수정이유

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설치에 관한 내용이 생략되어 센터의 명칭 및 설치에 관한 조문을 추가로 신설하는 등 내용 일부를 수정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국민” 을 “구민” 으로 한다.

제3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,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

#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“정신건강증진사업”이란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신건강 관련 교육·상담, 정신질환의 예방·치료, 정신질환자의 재활,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·교육·주거·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<u>국민</u>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.</p> <p>2. (생략)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국민</u>----- ----- -----.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제3조(명칭 및 설치)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하고,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
<p><u>제3조 ~ 제10조</u> (생략)</p>	<p><u>제4조 ~ 제11조</u> (현행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)</p>